

1. 개정이유

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

2. 주요내용

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(안 제1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전

3) 규제심사 전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공사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이전에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 외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 외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 4호의 공사는 평가서 초안에 대 한 의견수렴 절차 이전에도 안 전점검 결과에 따른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</u>